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3월 18일

ISSN 1976-0507 Vol. 4 No. 9

인도 2010/11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최윤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Tel; 3460-1025)



KIEP 1990-2010

■ 2010년 2월 26일 인도정부는 2010/11년 예산안을 통해 △ 재정건전화 △ 9%대 고성장 회복, △ 포괄적 성장 달성 등 향후 경제정책 운용의 기본 방향을 발표함.

- 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6.9%(중앙 및 주정부 통합재정적자는 11%)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세 개정, 공기업 지분 매각, 3G 통신망 주파수 판매 등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추진함.
-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농업 생산성 및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고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농민 금융지원, 사회복지 강화 등을 통해 소외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장을 추구함.

■ 이번 예산안은 고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고려한 예산안으로, 향후 인도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예산안 발표 후 인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무디스는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감소로 인한 인도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을 시사함.
- 2009/10년 GDP 증가율이 7.2%로 추정되는 등 세계적 불경기 속에서도 인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9%대 고성장 회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장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기업은 인도 예산안이 가져올 기회 및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인도의 개선된 투자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에너지 개발 및 발전, 은행 분야 등은 한국기업 진출에 호기를 제공함. 다만 예산안 실제 이행 여부,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인건비 상승 등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관세변동 품목의 경우,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개 요

- 2010년 2월 26일 인도정부는 △ 재정건전화 △ 9%대 고성장 회복 △ 포괄적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0/11년 예산안을 발표함.
-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약 11조 루피(약 2,300억 달러)이며, 이 중 중앙정부 계획지출규모는 약 5조 루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됨.¹⁾

표 1. 2009/10년 예산지출 주요 내용

구 분	2009/10 (Crore of Rupees)	2010/11 (Crore of Rupees)	증가율
총 지출(Total expenditure)	1,021,547	1,108,749	8.5%
비계획지출(Non plan expenditure)	706,371	735,657	4.1%
계획지출(Plan expenditure)	315,176	373,092	18.4%
중앙정부 계획지출(Central Plan Outlay)	425,590	524,484	23.2%
농업	10,123	12,308	21.6%
농촌개발 ¹⁾	51,560	55,190	7.0%
관개 및 홍수관리사업	404	526	30.2%
에너지	109,685	146,579	33.6%
산업 및 광물(Industry and Minerals)	30,694	39,019	27.1%
운송(Transport) ²⁾	88,948	101,997	14.7%
통신	16,099	18,529	15.1%
과학기술 및 환경	9,908	13,677	38.0%
사회서비스 ³⁾	5,446	7,554	38.7%
일반서비스	101,370	127,570	25.8%

주: 1) 농촌지역 주택건설 포함, 도로건설 미포함.

2) 농촌지역 도로건설 포함.

3) 농촌지역 주택건설 미포함.

자료: India Budget 2010/11.

-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를 위해 조세 개정뿐만 아니라, 55억 달러에 달하는 국영기업 지분 매각과 3G 통신망 판매 등의 정책을 실시함.
- 2009/10 회계연도의 인도 재정적자가 16년 만에 최고치인 GDP 대비 6.9%로 치솟은 가운데, 인도 정부는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1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5.5%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움.

1) 예산안 총 지출규모는 계획지출과 비계획지출을 합한 금액이며, 중앙정부계획지출의 경우 사회서비스 및 일반서비스, 경제적 서비스(농업 및 운송부문 등) 예산이 부문적으로 비계획지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지출과 금액의 차이가 있음. 계획지출(Plan expenditure)은 비계획지출에 포함되는 이자지불, 연금, 일반서비스, 사회서비스, 국방비, 주정부 지원금, 공무원 월급 등 고정지출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임.

- 9%대 고성장 회복(economy recovery)을 위해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 확대, 농업 생산성 개선, 투자여건 개선, 수출업체 금융지원 등을 실시함.
-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성장을 고려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달성을 위해 농민 금융지원 및 농촌·도시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2. 부문별 주요 내용

가. 재정건전화

1) 조세정책

- 인도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적용 범위 및 기준 수정(기본세율 유지) △ 일부 품목의 관세 및 물품세 인상 △ 서비스세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정을 실시함.

■ 직접세

①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개인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과세소득 수준을 대폭 높여 개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회복을 유도하고자 함.

표 2. 개인소득세 변동내용

기존		변경	
과세소득(Rs.)	세율(%)	과세소득(Rs.)	세율(%)
160,000 이하*	0	160,000 이하*	0
160,001~300,000	10	160,001~500,000	10
300,001~500,000	20	500,001~800,000	20
500,001~	30	800,001~	30

주: * 65세 이하 여성 면세점은 190,000루피, 65세 이상 노인 면세점은 240,000루피임.

자료: India Budget 2010/11.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0/11년 소득세수입이 약 3.6%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연도별 소득세수입 추이

연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소득세(Rs Bn)	493	560	751	1,026	1,060	1,250	1,206
증가율(%)	19.0	13.6	34.1	36.7	3.3	17.9	-3.6

자료: India Budget 2010/11.

② 법인세(Corporate Tax)

- 기본 법인세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인도 국내기업 법인세에 대한 추가세율(Surcharge)을 기존 10%에서 7.5%로 인하하였으며, 최저세율인 MAT(minimum alternative tax)²⁾는 기존 15%에서 18%로 인상함.
- 국내 및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은 추가세율 및 특별교육세(education cess)³⁾가 포함된 것이며, 아래 국내기업 법인세의 경우 새로운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⁴⁾

표 4. 법인세 관련 주요 변동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인세	- 기본세율 유지 • 국내기업 ¹⁾ : 33.22%(1,000만 루피 이하 매출기업은 30.9%) • 외국기업 ²⁾ : 42.23%(1,000만 루피 이하 매출기업은 41.2%)
MAT	- 기존 15%에서 18%로 인상
추가세율 ³⁾	- 인도기업에 한해 10%에서 7.5%로 인하

주: 1) 국내기업(Domestic company)이란 인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모든 기업으로 100%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도 포함됨. 따라서 순수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외국기업(Foreign company)은 위 국내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도에서 영업 중인 외국기업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등이 포함됨.

3) 매출 1,000만 루피 이하 기업은 미적용.

자료: India Budget 2010/11.

- 인도 정부는 2010/11년 법인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연도별 법인세수입 추이

연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소득세(Rs Bn)	827	1,013	1,443	1,929	2,134	2,551	3,013
증가율(%)	30.1	22.5	42.5	33.7	10.6	19.5	18.1

자료: India Budget 2010/11.

2) 최저세율이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조치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임.

3) 특별교육세(education cess)는 인도의 열악한 교육인프라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펀드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서비스세, 관세, 물품세 등 모든 중앙정부세가 이에 해당됨.

4) 세율계산사례 - 인도법인의 경우, 과세소득 INR 10 million 이상: $[30\%(\text{법인세율}) + 2.25\%(\text{surcharge, } 30\% \times 7.5\%)] + 0.97\%(\text{cess, } 32.25\% \times 3\%)$.

- 한편 인도의 법인세율은 33.2%(외국기업은 42.2%)로, 한국(24.2%), 중국(25.0%)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짐.

표 6. 주요국 법인세율 변동 추이

(단위: %)

국가	2000년 법인세율	2009년 법인세율	변화율
미국	39.2	39.1	-0.3
일본	43.3	41.3	-4.6
독일	52.0	33.0	-36.5
중국	33.0	25.0	-24.2
영국	30.0	28.0	-6.7
네덜란드	35.0	25.5	-27.1
프랑스	37.8	34.4	-9.0
이탈리아	39.5	30.3	-23.3
한국	30.8	24.2	-21.4
캐나다	43.6	33.0	-24.3
브라질	34.0	34.0	0
러시아	35.0	20.0	-42.9
인도*	42.0	33.2(42.2)*	-21

주: * () 안은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임. 실제로 외국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외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율 적용을 받음.

자료: Budget Impact 2010, Ernst & Young.

■ 간접세

① 관세(Customs duty)

- 기본 관세율(basic duty)은 10%로 유지,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실시함.
- 원유 및 석유, 디젤, 금 등에 대한 관세율을 5~10%까지 인상
- 금, 은에 대한 관세금액을 무게당(kg, g) 100~500루피까지 인상
- 농업기계 및 폴리머 등에 대해 0~30%까지 인하

표 7. 주요 품목 관세율 변동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변동
원유	-	5%	↑
석유 및 디젤	2.5%	7.5%	↑
석유화학 제품	5%	10%	↑
금괴 및 금화	200루피/10g	300루피/10g	↑
금(금괴 및 금화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 포함)	500루피/10g	750루피/10g	↑

표 7. 계속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변동
은	1,000루피/kg	1,500루피/kg	↑
백금	200루피/10g	300루피/10g	↑
농업기계	7.5%	5%	↓
후추	70%	30%	↓
아위(Asafoetida)	30%	20%	↓
바이오폴리머/바이오플라스틱	10%	-	↓
마그네트론	10%	5%	↓
로듐(Rhodium)	10%	2%	↓
모바일 악세서리 및 배터리, 부품	12.5%	-	↓

자료: India Budget 2010/11.

- 인도 정부는 2010/11년 석유류 관세 인상 및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관세수입이 3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연도별 관세수입 추이

연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소득세(Rs Bn)	576	651	863	1,041	999	845	1,150
증가율(%)	18.5	12.9	32.7	20.6	-4.1	-15.4	36.1

자료: India Budget 2010/11.

② 물품세(Excise duty)

- 출구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비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물품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
 - 가솔린 및 디젤에 대해 물품세율을 리터당 1루피 인상
- 인도 내에서 생산된 이탄, 갈탄, 석탄에 청정에너지세(Clean energy cess)를 부과할 계획이며, 대규모 전력사업 및 풍력발전에 관련된 제품에는 물품세를 면제함.

표 9. 주요 물품세율 변동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변동
비석유화학제품		8%	10%	↑
전기자동차 및 그 부품		-	4%	↑
디젤	브랜드	3.60루피/리터	4.6루피/리터	↑
	브랜드無	4.75루피/리터	5.75루피/리터	↑
가솔린	브랜드	13.35루피/리터	14.35루피/리터	↑
	브랜드無	14.50루피/리터	15.50루피/리터	↑
IT소프트웨어		8%	10%	↑
금(보석류)		500루피/10g	750루피/10g	↑
은(보석류)		1,000루피/kg	1,500루피/kg	↑
LED 조명		8%	4%	↓

자료: Budget 2009 highlight, India budget 2010/11, 보도자료 종합.

- 인도 정부는 2010/11년 물품세 수입이 29.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10. 연도별 물품세수입 추이

연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물품세(Rs Bn)	991	1,112	1,176	1,234	1,086	1,020	1,320
증가율(%)	9.2	12.2	5.7	4.9	-12.0	-6.1	29.4

자료: India Budget 2010/11.

③ 서비스세(Service tax)

- 2011년 4월 1일로 예정된 GST 시행 전까지 기본 서비스세는 기존 10.3%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서비스세 신규적용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적용범위를 확대함.

표 11. 주요 서비스세율 신규적용 및 변경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규적용부문	영화 및 녹음 관련 저작권
	사업체 명의 이전 및 행사, 서비스, 제품의 상표 프로모션
	부지(location) 제공 및 단지개발 부문
	기업체의 고용인 의료기록 보관 및 유지
	기업체 고용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병원 등의 건강서비스
적용범위 수정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범위 확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범위에 국내 및 해외여행을 포함
	스폰서십서비스 범위에 스포츠 부문을 포함
	항공 및 항만 내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부문을 포함

자료: India budget 2010/11, 보도자료 종합.

- 인도 정부는 2010/11년 서비스세수입이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2. 연도별 소득세수입 추이

연도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소득세(Rs Bn)	142	231	376	513	609	580	680
증가율(%)	80.0	62.4	63.1	36.4	18.8	-4.8	17.2

자료: India Budget 2010/11.

■ 상품, 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

- GST 시행시기를 2011년 4월 1일로 재조정함.

- GST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물품세, 서비스세, 중앙판매세 등을 통합한 새로운 간접세시스템으로 인도 정부의 세무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음.

2) 비(非)조세정책

-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비조세정책의 일환으로 △ 공기업 지분매각 △ 3G 통신망 주파수 판매 △ 新비료보조금 정책을 실시함.

■ 공기업 매각

- 인도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기업공개(IPO)나 지분매각(FPO)방법 등을 통해 미상장 공기업의 자산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2010/11년도에 약 4,000억 루피의 조세수입을 예상함.

- 현재 Oil India Limited, NHPC, NTPC, NMDC 등이 지분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인도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매각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 수는 약 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3G 통신망 구축 및 주파수 판매

- 인도 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G 통신망을 3G로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주파수 판매 등을 통해 2010/11년 약 3,600억 루피의 조세수입을 예상함.

■ 新비료보조금 정책 시행(2010년 4월 1일부로 발효 예정)

- 인도정부는 비료산업체에 제공되는 비료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의 보조금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 보조금 지출규모를 500억 루피로 예상, 지난해 대비 약 30억 루피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나. 고성장 회복을 위한 대책

- 인도 정부는 9%대 고성장 회복을 위해 △ 인프라 건설 확대 △ 에너지개발 확대 △ 농업부문 성장 지원 △ 투자환경 개선 △ 수출업체 지원 정책을 실시함.

■ 인프라 건설 확대

- 인도 정부는 9%대 고성장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건설 부문에 약 1조 7,00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임.
- 도로건설 부문에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1,700억 루피, 철도부문에 지난해 대비 95억 루피 증가한 약 1,67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임.
- 지난 회계연도 경기부양정책 시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설하였던 IIFCL(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의 잔여채권 매각(Takeout Financing)⁵⁾ 및 인프라건설 사업에 대한 재융자(refinance) 시행 정책을 확대할 예정
- 2009/10년 재융자 규모는 300억 루피였으며 2010/11년도에는 약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Takeout Financing의 경우 향후 3년간 2,500억 루피가 지원될 예정임.

표 13. 주요 인프라부문 예산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로	- 약 1,700억 루피 투자(지난해 대비 13% 증가)
철도	- 약 1,670억 루피 투자(지난해 대비 95억 루피 증가)
전력	- 약 510억 루피 투자(지난해 대비 약 300억 루피 증가)
신재생에너지부문	- 1,000억 루피 투자(2022년까지 20,000MW 전력생산 목표)

자료: India Budget 2010.

■ 에너지 개발 확대

- 고성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차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입찰 절차 및 규제를 강화하여 사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표 14. 주요 에너지부문 예산 및 주요정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부문	-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인도 신재생에너지부(Th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의 예산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000억 루피로 대폭 확대 - 카시미르 라다(Ladakh) 지역의 태양열, 소규모 수력 발전소 등의 건설을 위해 50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
입찰절차 개선	- 석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입찰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계획
석탄규제감독청 개설 (Coal Regulatory Authority)	- 석탄규제감독청을 개설, 해당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함.

자료: India Budget 2010/11.

5) 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일정 기간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은행의 장기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함.

■ 농업부문 성장 지원

- 농업부문 생산성 확대의 일환으로 인도 동부지역으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정책을⁶⁾ 확대하기 위해 약 40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녹색혁명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0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됨.
- 또한 강수량 부족 지역의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지표수관리(water harvesting)⁷⁾시설 및 6,000개의 콩 및 유지류 생산지역(pulses and oil seed villages)⁸⁾ 조성을 위해 30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함.
- 식품가공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5개의 대규모 푸드파크(Food Park)를⁹⁾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미 인도 내 10개의 푸드파크(Food Park)가 조성 중임.
- 농수산물 및 육류 보관을 위한 냉동 창고(시설) 건설에 대해 해외상업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사용을 허용함.

■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이전비, 상표 및 로열티 지불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할 예정임.
-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기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융부문 개혁도 실시함.
- 민간부문 및 비은행금융기관(NBFCs)에 대한 은행허가(Banking License) 확대 검토
- 금융입법개혁위원회(Financial Sector Legislative Reform Commission)를 발족하여 금융법안 수정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안정화기구(Financial Stability),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uncil)¹⁰⁾ 등을 설립하여 금융안정화 및 제도화를 추진

6) 인도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정책은 토양의 건강(Soil health), 수자원보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보존 프로그램임.

7) Water Harvesting은 가뭄 시 물 부족을 대비, 지표수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Rainwater harvesting의 경우 집이나, 학교, 건물 등에 파이프와 저장소를 설치,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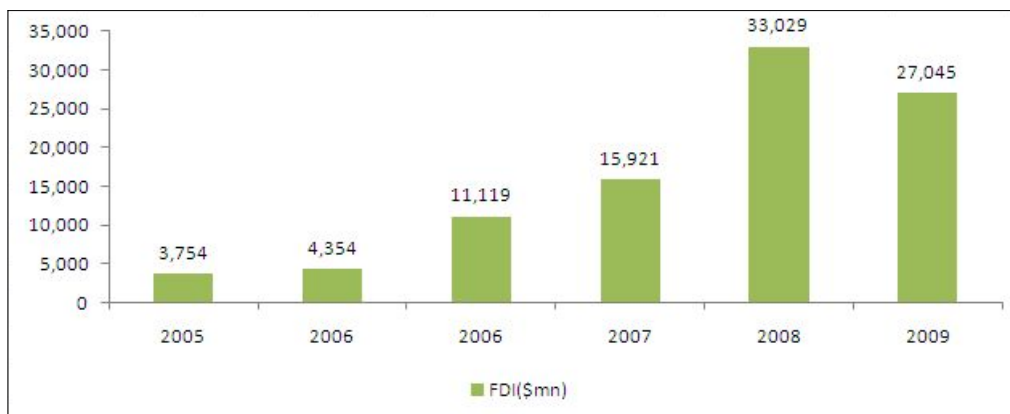
8) 최근 가뭄으로 인한 콩 생산량 감소를 우려, 인도의 콩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안정적인 콩 공급을 유지하고자 실시한 정책임.

9) 인도 정부가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클러스터로 식품가공업체들만이 입주가능하며 기업들은 관련 인프라 및 정부지원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식품가공 효율성 및 유통시스템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도함.

10) 개발위원회는 금융규제 관련 문제 조정 및 대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거시경제부문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금융시스템개선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루피의 예산을 책정
- 국영은행의 8% 자기자본비율(Tier-I capital) 기준 충족을 위해 1,650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 및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 확대도 예정
- 또한 지난 2009년에 공표한 인도회사법(Companies Bill 2009)¹¹⁾을 실시하여 사업규제 및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함.

그림 1.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200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입액	1,957	2,339	2,117	2,582	3,476	3,268	1,512	2,332	1,722	1,542
증가율	-55.9%	-37.6%	-46.2%	7.9%	54.7%	40.4%	-41.0%	55.8%	59.0%	13.2%

주: Calendar year.

자료: Minister of Commerce & Industry in India, Dep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DIPP).

■ 수출업체 지원

- 세계경기침체의 타격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 회계연도 경기부양책에서 실시되었던 금융지원 기간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중소수출기업, 섬유, 보석, 가죽, 카페트, 기타 수공업,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2%의 이자지원을 실시

표 15. 수출지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출업체 이자지원	- 취약 수출업체에 대한 2% 이자감면 지원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연장

자료: India Budget 2010/11.

11) 1956년의 회사법을 개정한 새로운 인도회사법은 △ 내부자거래법 강화 △ 자회사의 연결재무재표 작성 의무화 △ 7년 이후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요구 허용 △ 사외이사의 역할 명시 △ 회사설립 과정의 단순화 등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둠.

다. 포괄적 성장을 위한 대책

- 인도 정부는 포괄적 성장을 위해 △ 농민 지원 및 농촌개발 △ 도시개발 및 빈곤층 지원 △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실시함.

■ 농민 지원 및 농촌개발

- 지역·계층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및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표 16. 농민 금융지원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기금 확대	- 농업부문에 대해 3조 7,500억 루피(약 810억 달러) 규모의 대출기금을 마련(전년대비 약 37% 확대)
대출상환 연장 및 금리보조	- 대출상환기간을 2010년 6월 말까지 연장(6개월 연장) - 상환조건을 준수한 농민에게 2%의 금리보조 지원
농촌고용보장 대책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 약 4,000억 루피의 예산 배정(전년도 약 3,900억)
농촌 근대화 (Bharat Nirman)	- 주택, 도로, 전기, 통신, 식수, 관개 등 6개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촌지역 근대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약 4,800억 루피의 예산 배정
주택개발 (Indra Awas Yojana)	- 농촌지역 주택개발 및 공급을 위해 1,000억 루피 예산 배정
낙후지역 인프라기금 조성 (Backward Region Grant Fund)	-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건설 지원을 위해 730억 루피 예산 배정(지난해 대비 26% 증가)

자료: India Budget 2010/11.

■ 도시개발 및 빈곤층 지원

- 과도한 도시인구 증가로 발생한 도시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도시 빈민층 주택지원에 약 670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됨.

표 17. 도시개발 및 빈곤층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시지역 일자리 창출 (Swarna Jayanti Hahari)	- 약 540억 루피 예산 배정(전년대비 75% 증가)
도시주택 지원	- 도시 슬럼가 제거 및 주택개발을 통한 빈민층 주택제공을 위해 약 120억 예산 배정

자료: India Budget 2010/11.

■ 취약계층 지원(교육 및 보건·복지 부문)

- 학교교육 및 건강, 복지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표 18. 취약계층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학교교육	- 약 3,100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지난해 대비 약 16% 증가)
초등교육 강화	- 초등교육부문에 약 360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
관련 정부부처 예산 확대	- 가족복지 및 보건부의 예산이 약 2,200억 루피로 확대 배정(지난해 대비 약 14% 증가) - 사회정의 및 강화부(The Ministry of social justice and empowerment)의 예산이 약 4,500억 루피로 확대 배정(지난해 대비 약 80% 증가) - 소외계층관리부(The Ministry of minority affairs)의 예산이 약 2,600억 달러로 배정(지난해 대비 50% 증가)
지역사회 보건정보목록(district health profile)	- 지역사회 보건정보목록(district health profile) 작성을 위해 매년 건강조사를 실시
여성 및 아동 지원	- 여성 및 아동 개발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대비 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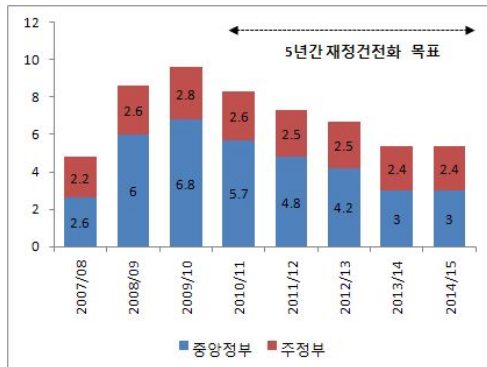
자료: India Budget 2010/11.

3. 평가 및 시사점

가. 예산안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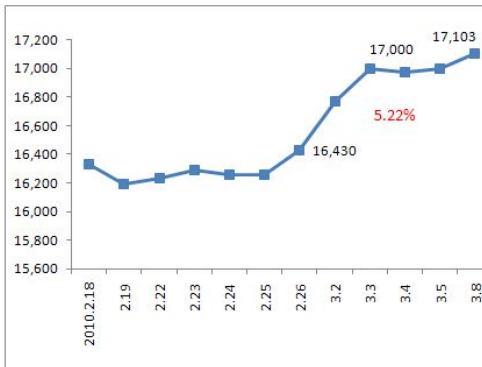
- 이번 인도의 2010/11년 예산안은 재정건전화 및 고성장 회복, 시장개방을 적절히 고려한 균형잡힌 예산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냄.
- 인도 정부가 예산안에 부채감소 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은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재정원칙, 공기업 민영화 등 일련의 정책목표가 향후 인도 신용등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예산안이 발표된 2월 26일 이후 3월 8일 현재까지 인도의 대표증시인 BSE SENSEX 주가지수는 5.22%포인트 상승함.
- 재정부문 출구전략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은 것과, 인도정부가 일부 시장개방에 대한 계획 및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재정적자 추이 및 재정건전화 목표



자료: India Budget 2010/11.

그림 3. BSE SENSEX 추이



자료: Yahoo finance.

- 부문별 정책목표 중 재정건전화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 6.9%의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달성시킨 바 있어, 이번 재정적자 축소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함.
- 인도 정부는 예산안 발표 전날인 2월 25일 제13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하여 201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5%대로 낮추기로 함.
- 무디스¹²⁾는 인도가 3년 이내 현재 78.8%에 이르는 GDP 대비 부채규모를 70%까지 감소시키고, 현재 11% 가까이 확대된 통합재정적자(중앙정부와 주정부를 합친 재정적자)도 8%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복잡한 세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및 민영화 추진 등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인도 정부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움직임은 인도가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9년 11월 인도의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2년간 최고치인 11.7%를 보였고, 2009년도 농업이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음에도 제조업(8.9%), 은행 및 보험서비스(10%)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른 성장으로 7.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3월 1일 만모한 싱 총리가 향후 25년간 9~10%대 성장을 예상한 데 이어, 재무장관 프라납 무커지도 인도 경제가 9%를 넘어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함.
- 포괄적 성장은 현 정부의 선거공약인 동시에 정권 유지에 중요한 부문으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12) 무디스는 이미 지난 2009년 12월 16일 인도의 견조한 성장세와 빠른 회복력 등을 근거로 인도 local currency rating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도시개발 및 빈곤층 지원, 교육·보건·복지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사업목표는 Congress당이 UPA 연합정부 구성 시 연합한 소외 및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임.
- 따라서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동 목표 달성 시 인도 경제의 고성장 기반도 함께 확충되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기대 밖의 저조한 성장률 달성 시 재정적자 악화 및 물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산안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또한 예산안이 지출 축소보다는 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작성됨에 따라, 9%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음.
- 지난 3월 4일 인도 정부는 2009/10 회계연도에 국영은행 자금 투입, 식품 및 비료가격 보조, 연금지불 등으로 3,178억 루피(69억 달러)의 추가 예산집행을 국회에 승인 요청한 바 있음.
- 예산안에서 제시한 바와는 달리, GST가 12%를 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주별로 다른 GST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
- 13차 재정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 5%, 주정부 7%로 구성된 12%의 GST를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세수 중립 원칙과 주정부들이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16~17%대, 일부 주에서는 2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제안하고 있기도 함.
- 연정 파트너 설득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의 국회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 현 UPA 정권에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SP당과 RJD당이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난 3월 9일 상원에서 'Women's Reservation Bill'¹³⁾이 통과되자,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Samajwadi Party(SP)와 Rastriya Janata Dal(RJD)은 연정 탈퇴 가능성을 시

13) Women's Reservation Bill은 의회석 1/3을 여성에게 할당토록 하는 파격적인 법안임. 인도 하원 총 545석 중 여성의원 수는 현재 59명에 불과하나,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선거부터는 여성 의원 수가 181명까지 늘어나게 됨. 이 경우 하층카스트와 무슬림 사회에서는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각각 UP 주와 Bihar 주의 하층카스트 등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SP당과 RJD당이 동 법안에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사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 동 법안은 3월 셋째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인바,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핵심 경제법안이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시사점

- 동 예산안이 실행된다면, 인도 진출을 시도 또는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 특히 인프라, 에너지 개발, 은행 등 분야의 우리 기업에는 더욱 좋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 특히 인프라 건설 관련 예산안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L&T, Reliance Infra 등 인도 현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좋은 사업 기회가 주어짐.
- 이미 제11차 5개년 계획(2007년 4월~2012년 3월)에서도 인프라 예산이 총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인도 정부는 2014년까지 GDP의 9%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임.
- 이번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IIFCL 투입자금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관련 지출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원 부족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규제 완화, 민관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¹⁴⁾을 통한 외국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IIFCL 투입자금 확대는 인프라 관련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프라 진출시 현지자금 조달 예정 중인 PPP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재생에너지, 태양광, 수력, 원전 등 인도 발전산업 및 에너지 효율 증대와 관련된 분야가 주는 기회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인도가 8% 성장 가정하에서도 2017년까지 현재 발전용량의 2배에 달하는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이에 이번 예산안에서 인도 정부는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10억 루피를 추가 배정하기로 함.

14) PPP는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자들 간에 지켜야 할 의무의 분장과 리스크 분담 등을 최적의 방식(optimal way)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은 세수입을 통한 투자금액 조성, 보유 자산의 이전, 파트너십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타의 지원(in-kind support)을 포함하며, 민간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PPP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액을 일부 분담하는 경우도 있음.

- 인도가 지난 3월 9일 중국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코펜하겐 협정¹⁵⁾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및 인도시장 진출도 매우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기업들은 최근 인도의 경기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이로 인한 환율 변동성 증대, 인건비 상승 등의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인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어 따라 전력 프로젝트에 사용될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2010년 1월 수입량이 전년대비 35.5% 증가한 24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 적자폭이 증가함.
 - 3월 4일 글로벌 인적자원 전문 컨설팅업체인 Hewitt Associates에 따르면, 2010년 인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10.6%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높은 인건비 상승률과 이직률은 우리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편 2010년 1월부터 한·인도 CEPA가 발효되어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관세변동 내용을 잘 파악하여 유리하게 적용 및 활용해야 할 것임(표 7 참고).
 - 이번 예산안에 언급된 주요 품목의 개정 관세율 품목에는 자동차부품 및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음.
 - 농업용 기계, 후추 등 일부 품목의 개정 세율은 한·인도 CEPA 특혜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경우 실행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반면 석유화학 및 석유류 등 관세인상 품목들의 경우,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KIEP**

15) 코펜하겐 협정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당사국총회에서 타결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석국간 합의 내용을 담고 있음.